

#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과 제정방향



이 영 실 의 원

# Contents

---

I. 중앙정부 및 경남 현황

II. 경남 조례제정의 필요성

III. 경남 조례안

I



**중앙정부  
및  
경남 현황**

# 01. 응급의료 일반 현황

##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 계획(2021.2.)

〈3대 분야, 11개 실행 과제 개요〉

### 현장 · 이송 단계

- (1) 병원 전단계 환자평가와 중증도 분류체계 개선
- (2) 지역단위 이송체계 마련
- (3) 적정병원 이송 관리체계 확립

### 병원 단계

- (1) 중증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
- (2) 중증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 (3) 수용곤란 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4) 중증환자 병원간 전원체계 구축
- (5) 환자의 합리적 응급의료기관 이용 유도
- (6) 응급의료기관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 응급의료기반 단계

- (1)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 (2) 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체계 지원을 위한 중앙지원조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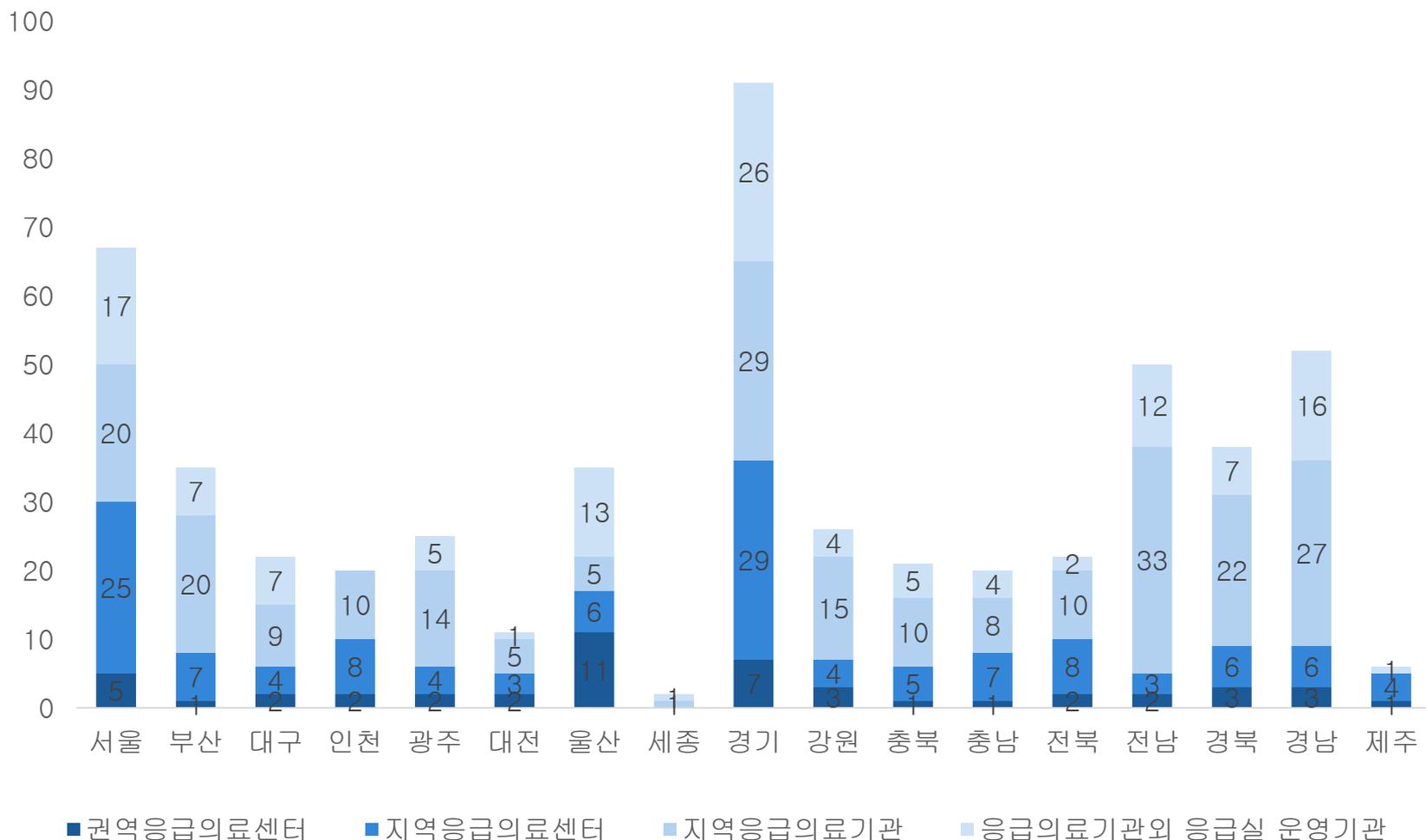
# 01. 응급의료 일반 현황

## ●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주요 변화(보건복지부)

구분	현재	2022년 이후
현장 이송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9 구급대(현장·이송)와 병원간 환자분류 상이</li> <li>지역별 이송지침 부재에 따른 적정이송의 어려움</li> <li>객관적 기준에 따른 이송관리의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이송·병원 전단계에 걸쳐 환자분류 체계화</li> <li>지역 주도 지역 응급의료 자원 조사,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 마련</li> <li>구체적 지침을 토대로 한 적정 이송 관리체계 마련</li> </ul>
병원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응급의료 자원격차 및 진료성과의 차이</li> <li>응급의료기관 종별 불분명한 기능적 차이</li> <li>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부재</li> <li>중증환자 전원 시 병원선정 및 안전 전원의 어려움</li> <li>감염병 위기시에 대응한 인프라 및 운영지침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개 중진료권별 중증응급의료센터 1개소 이상 설치 - 중증응급 진료 인프라 대폭 확충</li> <li>중증도에 기반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체계 및 합리적 응급의료 이용 기반 마련</li> <li>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li> <li>중증응급환자 안전한 전원관리 체계 마련</li> <li>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li> </ul>
응급 의료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별 역량 격차</li> <li>형식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에 응급의료지원단(가칭) 및 전담팀 구성 - 지역 자원조사 및 이송체계 마련 등 실질적 기능 수행</li> <li>지역 응급의료역량지수 개발, 정책 환류 및 지자체 관심 제고</li> </ul>

# 01. 응급의료 일반 현황

## ●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외 응급실 운영기관 현황(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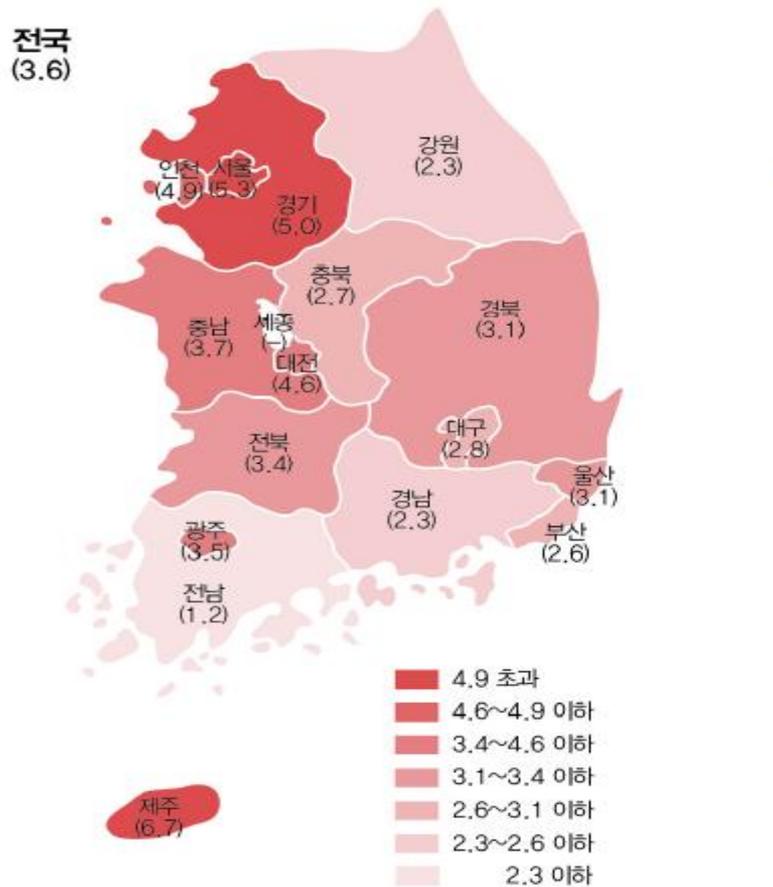


자료: 2019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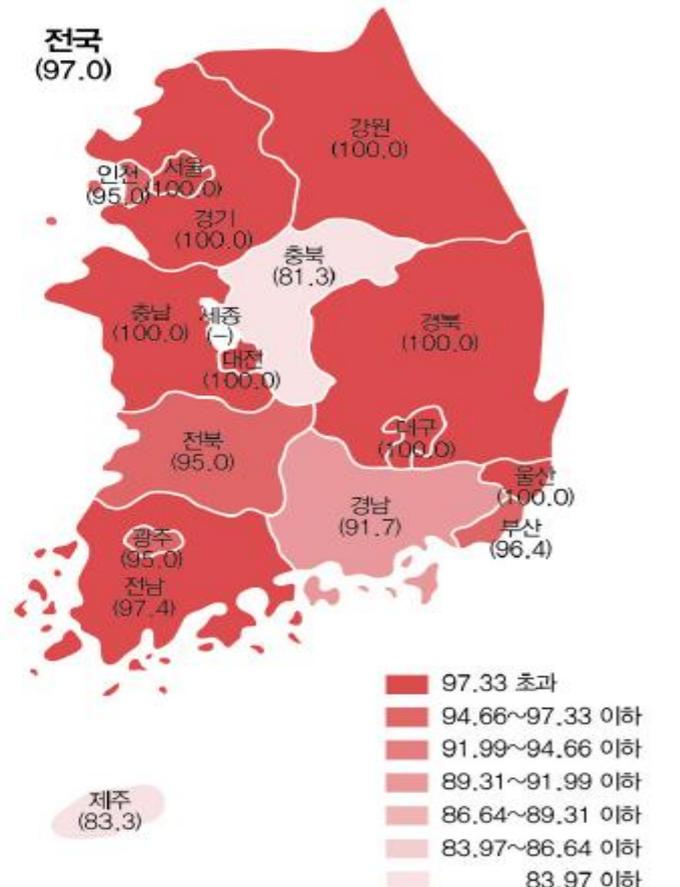
# 01. 응급의료 일반 현황

## 응급의료기관 근무인력 현황(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기준)

응급의료기관 1개소 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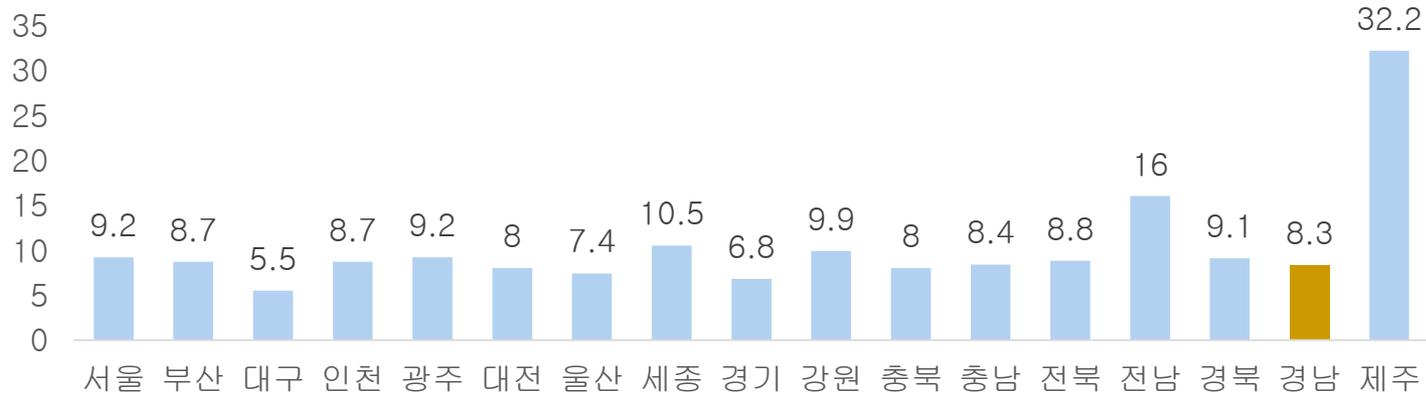
24시간 전담의사 근무 총족률  
(단위 :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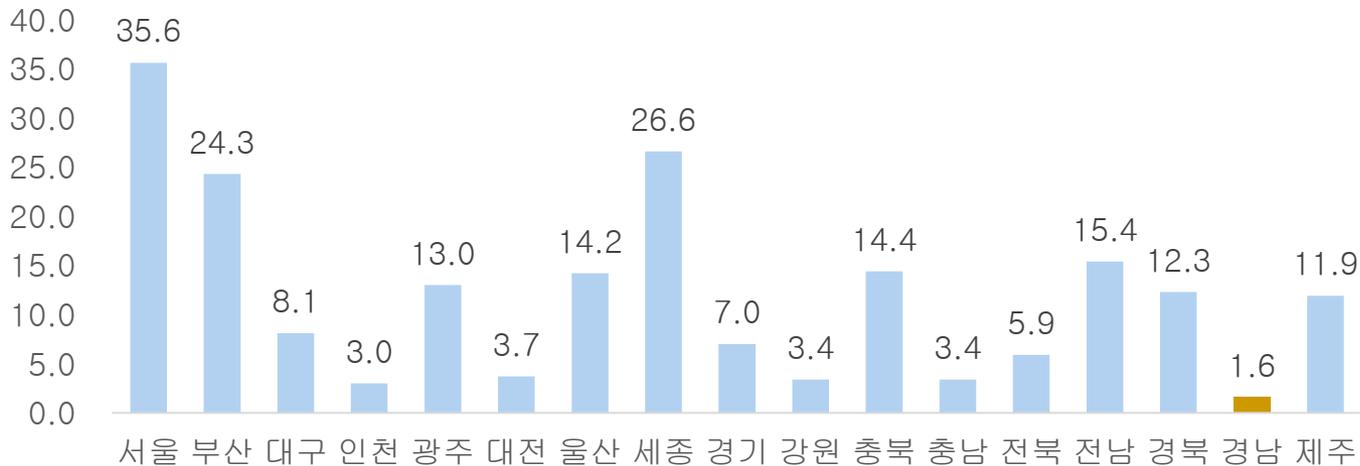
자료: 2019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보건복지부)

# 01. 응급의료 일반 현황

## ● 인구 만 명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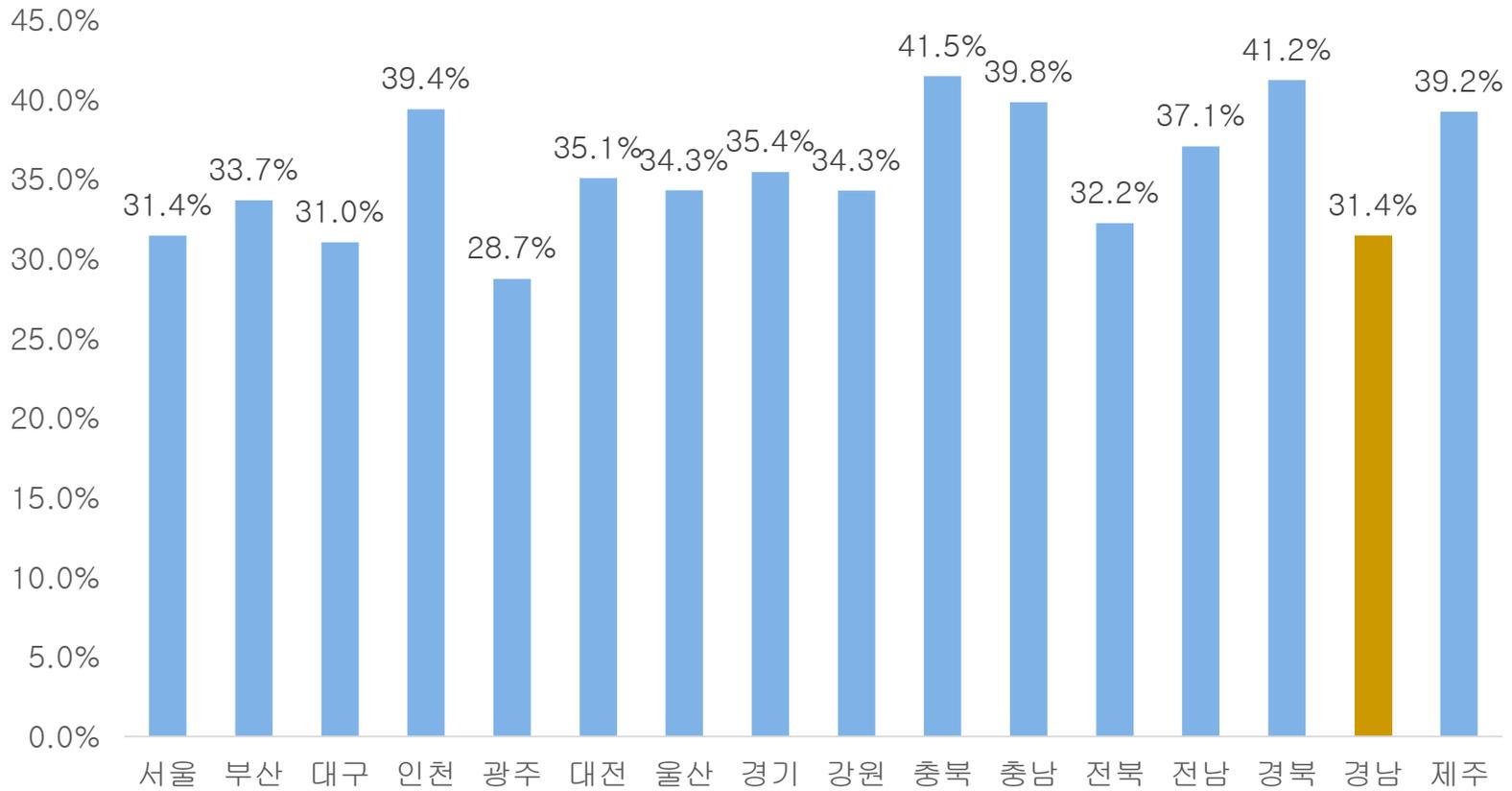
## ● 인구 천 명당 응급의료 교육 현황



자료: 2019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보건복지부)

# 01. 응급의료 일반 현황

## ● 발병 후 2시간 이내 응급실 도착 비율



자료: 경상남도 내부2019년도 응급의료 통계연보(보건복지부)

# II



## 경남 조례제정의 필요성

# 01.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지자체의 역할]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시책 마련 등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01.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정보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통신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02. 타시도 조례 및 주요정책 현황

## 타시도 조례현황

‘응급의료’ 에 관한 조례 제정 : 경남, 강원을 제외한 전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 대구, 인천, 강원, 경남

‘응급처치 교육 ’ 에 관한 조례 : 부산, 인천, 경남, 제주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응급의료	○	○	○	○	○	○	○	○	○	-	○	○	○	○	○	-	○
응급의료위원회	○	-	○	○	-	-	-	-	-	○	-	-	-	-	-	○	-
응급처치 교육	-	○	-	○	-	-	-	-	-	-	-	-	-	-	-	○	○

타시도 조례동향을 반영하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이 적절함

# 02. 타시도 조례 및 주요정책 현황

## 시도별 조문 비교

※ 응급의료지원단, 협력추진단 운영 시도 중심

서울(2009.03.)	대구(2015.10.)	울산(2020.10.)	충남(2010.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책무)	제3조(시행계획)
제4조(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응급의료시행계획)	제4조(지원)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제5조(응급의료협력추진단 설치 운영 등)	제5조(응급의료위원회)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제6조(구조응급처치 교육 및 보급 등)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권장)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등)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	제7조(장비관리)	제7조(회의)	제7조(설치 및 권장)
제8조(재난응급 의료지원 및 교육 등)	제8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8조(간사)	제8조(장비관리)
제9조(병원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응급의료에 대한 홍보)	제9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제9조(응급처치 교육홍보)
제10조(서울시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구조응급처치 교육 및 보급 등)	제10조(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응급환자 이송)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응급의료 장비의 지원 및 관리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2조(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		제12조(재난 의료지원 및 교육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등)		제13조(병원 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위원회의 제척 등)
제14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제14조(응급환자의 이송)	제14조(해촉)
제15조(지도 감독)		제15조(중증응급환자에대한 응급의료 등)	제15조(회의)
제16조(안내표지판 설치)		제16조(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등)	제16조(수당과 여비)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제17조(운영세칙)
		제18조(안내표지판 설치)	
		제19조(시행규칙)	

# 02. 타시도 조례 및 주요정책 현황

## 시도별 차별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서울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제5조),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제14조), 안내표지판 설치(제16조)
부산	-
대구	응급의료협력추진단 설치운영 등(제5조)
인천	-
광주	-
대전	응급의료 협력 체계 구축(제10조)
세종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제10조)
울산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등(제9조)
경기	-
강원	조례 없음
충북	-
충남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제5조)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조례 없음
제주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제12조), 안내표지판 설치(제13조)



**응급의료 지원 조례 현황**

경남, 강원을 제외한 전 시도에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 울산, 충남에서는 응급의료지원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III



**경남  
조례안**

# 01.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현황 및 제정 방향

## ■ 응급의료관련 조례 현황

###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1.1.1.제정), 식품의약과

(제3조 설치 및 기능)도지사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                                     |                              |
|-------------------------------------|------------------------------|
| 1. 지역응급의료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 2. 지역응급의료계획의 변경              |
| 3. 지역응급의료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              | 4. 응급환자보호를 위한 시책             |
| 5.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 6.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 확보 지원 |
| 7. 응급의료통신망 구축                       | 8. 응급의료기관 등에 관한 지역균형시책       |
| 9.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

###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2019.12.26제정), 보건행정과

(제14조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수준 향상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수준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설치·운영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협력되도록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02.08. 제정),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제5조(교육실시)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과 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 01.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현황 및 제정 방향

## ■ 제정추진 과정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수립(2020.1.)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 발표(2021.2.)
- 경상남도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발표(2021.5.)
-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필요성 제기
- 제1회 경상남도 응급의료 심포지엄 개최(2021.8.)

## ■ 제정목적

경상남도 응급의료 시행계획,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위급상화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02. 제정 주요내용

### 제1조(목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제2조(정의)

- (응급환자)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응급의료)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
- (응급처치)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医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 02. 제정 주요내용

### 제2조(정의)

- (응급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 (구급차등)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
- (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 (자동심장충격기)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

### 제4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매년 수립
  - 응급의료 인력의 교육·훈련 계획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지원 및 육성 계획
  - 환자이송체계의 개선계획
  - 응급의료 정보통신체계의 운영계획
  -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발생시 응급의료 체계의 대응계획
  - 그 밖에 도지사가 응급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02. 제정 주요내용

###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임의)
  - 정책개발 자문
  - 응급의료 현황조사(연구) 및 평가
  - 응급의료 교육·훈련 및 홍보 계획 수립 시행
  - 응급의료 질 관리 및 통계
  - 그 밖에 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등)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임의)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에 따른 예산지원 (임의) 및 정기점검(강행)

### 제7조(응급처치 교육홍보)

- 도민의 응급의료에 대한 알 권리 충족 및 구조 및 응급 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강행)

## 02. 제정 주요내용

### 제9조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응급의료협의체 구성(임의)

### 제10조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 시책, 응급환자 보호 시책 등 응급의료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둠(강행)
- 위원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 위 원 :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 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보건국장
  - 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방호구조과장
  -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03. 향후 방안

##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 환자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응급의료 문제점 파악 및 개선활동에 대한 평가, 환류 강화
- 분산되어 있는 응급의료 주체의 통합 지도 관리가 가능한 기관 필요
- 응급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홍보지원
- 응급의료 현황분석과 정책제언을 위한 연구활동 및 협업 강화
-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 방안 추진 및 도민의 알 권리 증대를 위한 도내 응급의료 정보 통합 제공

## 지역 응급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 응급의료종사자 및 일반인에 대한 교육 확대로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

**- 감사합니다 -**